

비수도권 지역기업 대상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기금(펀드)' 조성

- 모태기금(펀드), 지자체 등 약 225억원 출자

- 비수도권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에 집중 투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기금(펀드)'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지역엔젤투자 재간접기금(펀드)'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자(子)조합)에 출자하는 모기금(펀드)으로, 자(子)조합별 약정총액 기준 최대 80%까지 출자한다.

출자를 받은 자(子)조합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조합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므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기금(펀드)는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지역엔젤투자 재간접기금(펀드)의 출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전문개인투자자 또는 창업기획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은청 벤처정책관은 "지역엔젤투자 재간접기금(펀드)이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6월 20일 10시부터 7월 11일 14시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kvic.or.kr/알림마당-공지사항-출자사업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벤처정책관 투자관리감독과	책임자	과 장	김민지 (044-204-7720)
		담당자	사무관	임선아 (044-204-7724)
		담당자	주무관	임미현 (044-204-7728)

1.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개요

- **(목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출자금 총액의 100%를 엔젤투자자가 지역기업 투자 목적으로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자펀드)에 재출자
 - * GP(업무집행조합원)에 지급하는 관리보수 및 펀드 운용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
- **(엔젤투자자의 범위)** 관련법령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창업기획자·신기술창업전문회사·창조경제혁신센터·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지역기업의 범위)**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비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는 창업·벤처기업 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 **(규모)** 200억원(모태펀드) + a(지자체 출자 약 25억원)
- **(조합원)** <GP>한국벤처투자(KVIC) / <LP>모태펀드·지자체 등
 - 지자체가 LP로 출자 시, 모태펀드가 지자체 출자 규모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기업에 투자하는 조합에 매칭 출자

2. 자펀드 운영방안

- **(출자비율)** ① 1차 공고(모태 재원만 활용) : 최대 60%(또는 최대 30억원)
② 2차 공고(모태 + 지자체 재원) : 최대 80%
- **(최소 결성규모)** 재간접펀드 출자금 포함 10억원 이상
- **(투자 의무)**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2차 공고에 지원하는 자펀드 운용사는 위의 투자 의무와 더불어 중점투자지역 기업에 약정총액의 40% 이상 투자 필요